
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2025.12.29(월)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『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』를 공시합니다.

--- 다 음 ---

1.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사항

구 분	성 명	직 위	임 기
이사회 의장	이석원	대표이사	2026.01.01 ~ 2026.12.31
선임사외이사	조성부	사외이사	2025.03.25 ~ 2026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

2.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- 원만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
- 내부 임원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이사회 독립성 저해와 경영진 견제기능 축소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25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성부 사외이사를 2026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의 임기로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함

3. 선임일: 2025년 12월 29일(월)